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 번	안 호	5104
--------	--------	------

발의연월일 : 2017. 1. 13.

발의자 : 황주홍 · 정동영 · 이찬열
 소병훈 · 이양수 · 이동섭
 정인화 · 이종걸 · 전혜숙
 채이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2조(보고와 검사)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가 사육현황 등 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농림축산식 품부에서 요청할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월별, 연도별 현황파 악에 어려움이 있음.

국내 축산물의 가격, 수급 안정화 도모 및 사육두수 생산량 조절 등을 목적으로 협회와 일선 축산농가 측의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사육두수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200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도축능력을 보유한 패커가 자신들이 조달한 소, 돼지, 양의 거래량과 거래가격을 현물시장 및 조달계약 등 거래방식별로 미농무성에 주(州) 단위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사육현황, 출하두수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일반농가들에게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생산량 조절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

또한, 현행법 제2조제6호의 “계약사육농가”는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사육자재 등을 공급받아 출하하는 자로 한정되어있으나, 최근 계열화 사업자로부터 사육자재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바 계약 사육농가의 범위에 이러한 경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6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공급받아”를 “공급받거나 구매해”로, “출하하는”을 “출
하 또는 판매하는”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검사”를 “공시,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명하고 공시하여야 한다”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고, 제출한 자료 중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
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공개
표준양식을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를 “사용을 권장하고, 수집된 정
보를 전자 문서화 하여 공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계열화사업자는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부처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열화 사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검사 관리하도록 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

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중 “제32조제1항에”를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32조제4항에”로, “거짓자료를”을 “거짓 자료를”로 한다.

부 칙

i)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 농가”라 한다)란 계열화사업자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 또는 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u>공급받아</u>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u>출하하는</u> 자를 말한다.	6. ----- ----- ----- ----- ----- ----- ----- <u>공급받거나 구매해</u> ----- <u>출하 또는 판매하는</u>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2조(보고와 <u>검사</u>)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에 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u>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제32조(보고와 <u>공시, 검사</u>) ① ----- ----- ----- ----- ----- ----- <u>명하고 공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의 경우에 농림축산식	② -----

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의 사육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하고, 제출한 자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 공개 표준양식을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사용을 권장하고, 수집된 정보를 전자 문서화 하여 공시한다.

④ 계열화사업자는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부처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열화 사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검사 관리하도록 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

